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 10.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 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기업지원과)

대기업 수준의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소재 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북(구미)를 국내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조성 가능

##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 위치 : 공단동 267-96번지 일원(창업보육센터 부지)

※ 전체 부지 중 일부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입주 예정

○ 규모 : 연면적 5,950m<sup>2</sup>, 지상4층

※ 기존 창업보육센터 건물 철거(연면적 5,700m<sup>2</sup>, 지하1층/지상3층, 1976년 준공)

○ 사업기간 : 2024 ~ 2026년

○ 총사업비 : 18,000백만원(국 9,000 도 2,700, 시 6,30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인프라 건축	부지(건물)확보	-	지방비 부담
	건물 설계비	500	
	건축·감리비	8,500	
시설(환경)조성 및 장비·기자재구축		8,500	국비 부담
AI 알고리즘·시스템 기획·설계비		300	
기술정보수집		200	
합계		18,000	-

○ 기준가격 : 18,000백만원

○ 추진현황

- 신규사업(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 기획 : '22. 11월
-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대응 및 반영(국비5억) : '23. 6월
- 국회, 2024년도 예산 반영 확정(국비5억) : '23. 12월
- 산업부 세부시행계획 확정 : '24. 2월
- 디자인AI 인프라 공모사업 선정(구미시) : '24. 6월

○ 향후추진계획

- 공모사업 변경 신청(부지 변경) : '24. 10월
- 1차년도 사업비 편성 : '24. 11월
- 1차년도 설계 발주 : '24. 11월 중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원)

구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	5,700	18,000
	1.매입			
	2.교환 으로 취득			
	3.기타 취득	1	5,700	18,000

## 취득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원)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사유	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5,700	18,000				
취득	건물	공단동 267-96	5,700	18,000	2026년	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구미시	신축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비용추계서

## [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건립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간 : 2025 ~ 2026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출	○ 건축·감리비	-	4,000	4,500	8,500
	○ 설계비	500			500
	○ 기반 구축 (장비, 기자재 등)	500	4,000	4,500	9,000
	계	1,000	8,000	9,000	18,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500	4,250	4,250	9,000
	도 비	150	1,275	1,275	2,700
	시 비	350	2,975	2,975	6,300
	민 간				
	기 타				
	합 계	1,000	8,500	8,500	18,000

###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추진 일정 및 공사 일정 등에 따라 연도별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 이영섭(054-480-610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총계	180		
공사비	소계	129.5	
	건축	129.5	◎ 전용공간 건축 및 시설 구축 : - 약 $0.032/m^2$ × 5,950 $m^2$ (※ 감리비 포함) ※ 설계 내용에 따라 건축 단가 등 변경 가능
용역비	소계	32.5	
	설계비	5	◎ 전용공간 설계비 : 5억 원 - 설계비(계획·중간·실시) : 4.4억 원 ☞ 건축비 × 건축설계대가요율(제2종(보통) 기본) (134억 원/식 × 3.28%)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설계 : 0.22억 원 ☞ 4.4억 원/식 × 5%(5등급 : 대가의 5%) - 제경비 : 0.38억 원 ☞ 0.38억 원/식 × 1식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참고
	장비·기자재 구축	22.5	◎ 장비·기자재 구축 : 22.5억 원 ※ 장비·기자재 산출 기초 참조
	시스템	3.5	◎ AI 알고리즘·시스템 기획·설계비 : 3.5억 원 - 3.5억 원/식 × 1식
	기술 정보 수집	1.5	◎ 인프라 운영모델 수립 : 1.5억 원 - 1.5억 원/식 × 1식
예비비	예비비	18	◎ 예비비 18억원 - 179억원/식 × 약 10%/식 ※ 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의 10%

※ 공사비 산정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사례 분석(21~23년)

※ 설계비 및 감리비 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

1) 최근 3년 유사 규모 사업  $m^2$ 당 건축비\* ×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값(3.77%)

\* 건축비 산출 근거 참고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7.~ 11. 생략
- ② 생략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 ④ 생략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권 미 영)
	팀 장	김 은 화 (시 병 연)
	담 당 자	주 정 호 (480-5072) 이 영 섭 (480-6103)